

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출장 및 출장여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, 회계담당공무원(출납원을 포함한다)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등 출장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고,

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 154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8조(출장공무원)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함)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출장 및 출장여비 관련 업무에 철저하였어야 했다.

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, 소속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해당자들로 부터 출장복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징구에 철저하지 못하였고, 그에 따라 최근 4년여('14.1.~'18.2.)간 복명서 등 출장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총 2,784건의 출장에 대하여 48,360천 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,

2017.11.1.에 다녀온 출장에 대하여 40일이 지난 2017.12.11. 결과보고를 하는 등 [표1]과 같이 2017년도 인재채용과(예시)의 경우 14일 이상 지연하여 출장 결과를 보고한 건수가 133건(353명)에 달하고,

【표1】 2017년도 가과(예시) 출장 지연보고 현황

연번	소속	성명	출장일	보고일	지연일수
1	가과	갑자, 을자, 병자	'17.1.13	'17.2.2.	20
- 생략 -					
58	가과	정자, 무자, 기자	'17.6.1	'17.7.6.	35
- 생략 -					
119	가과	경자, 신자	'17.11.1	'17.12.11.	40
120	가과	임자, 계자	'17.11.1	'17.12.11.	40
- 생략 -					
133	가과	갑수, 을수, 병수	'17.12.5	'18.1.3.	29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2016년도 가과(예시)의 경우 [표2]와 같이 출장에 동행하지 아니하여 출장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(서무 등)가 타인의 출장에 대해 대신하여 결과보고를 한 건수가 16건(42명)에 달하는 등

【표2】 2016년도 가과(예시) 출장 대리보고 현황

연번	소속	성명	출장일	보고일	보고자	비고
1	가과	갑외 1명	'16.1.5.	'16.2.4.	신	대리
2	"	갑외 1명	'16.1.6.	'16.2.4.	"	"
3	"	갑외 1명	'16.1.8.	'16.1.21.	"	"
4	"	갑외 2명	'16.1.27.	'16.2.4.	"	"
5	"	갑외 3명	'16.2.12.	'16.3.8.	"	"
6	"	갑외 1명	'16.2.19.	'16.3.8.	"	"
7	"	갑외 1명	'16.2.25.	'16.3.8.	"	"
8	"	을	'16.3.25.	'16.4.8.	"	"
9	"	갑외 3명	'16.6.20.	'16.7.5.	"	"
10	"	병외 7명	'16.9.5.	'16.10.12.	"	"
11	"	정	'16.7.19.	'16.8.3.	임	대리
12	"	무외 2명	'16.12.5.	'16.12.26	"	"
13	"	무외 2명	'16.12.15.	'16.12.26	"	"
14	"	기외 2명	'16.12.19.	'16.12.26	"	"
15	"	기외 2명	'16.12.23.	'16.12.26	"	"
16	"	경	'16.12.21.	'16.12.26	"	"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출장 결과보고가 여비 지급에 쓰일 증빙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야기하였고, 위의 3가지 부적정 사례(증빙자료 없는 출장에 대한 여비지급·출장 지연보고·출장 대리보고)에 대한 총괄현황은 다음 [표3]과 같다.

【표3】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관련 부적정 사례(증빙자료 없음 지연보고·대리보고) 총괄현황
(단위: 건, 명, 천 원)

연도	구분	증빙자료 없음(미보고)		지연보고 ※14일 이상	대리보고
		출장자 수	여비 지급금액		
	계	2,784	48,360	1,644	208
	소계	1,061	20,690	94	20
2014	가과	409	8,440	32	-
	나과	617	11,650	11	-
	다과	35	600	51	20
	소계	810	14,070	341	83
2015	가과	614	10,520	7	41
	나과	149	2,690	177	-
	다과	47	860	157	42
	소계	327	5,260	489	52
2016	가과	71	980	41	10
	나과	188	3,060	213	-
	다과	68	1,220	235	42
	소계	557	7,900	591	52
2017	가과	242	2,920	67	21
	나과	260	3,900	171	-
	다과	55	1,080	353	31
	소계	29	440	129	1
2018	가과	5	60	4	-
	나과	24	380	74	-
	다과	-	-	51	1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<주> '출장자 수'의 경우, 총(연)인원 기준임.

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빙자료 없는 출장에 대한 여비지급, 출장결과 지연보고·대리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(주의요구)